

투자위험등급 :
3 등급[다소높은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베어링자산운용(주)는 이 투자회사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3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베어링 고배당 증권 투자회사(주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베어링 고배당 증권 투자회사(주식) 주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기구 명칭 : 베어링 고배당 증권 투자회사(주식)
- 집합투자업자 명칭 : 베어링자산운용 주식회사(02-3788-0500)
- 판매 회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집합투자업자(www.barings.com/ko)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 기준일 : 2018.03.10
-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18.03.21
-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회사의 주권 1조주
-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베어링자산운용(주)본점, 금융위원회, 각 판매회사 영업점

*이 투자회사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기재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존속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15. 발기인·감독이사에 관한 사항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투자회사의 출자금에 관한 사항
4.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5. 집합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 사항

[붙임] 용어풀이

〈투자 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 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 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과거의 투자 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 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7.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8.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 금액보다 실수령 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9.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 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소규모펀드 해당 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동 펀드의 등록신청서를 포함한 일괄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간이 및 예비 포함)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요약정보**[간이투자설명서]**

(작성 기준일 : 2018.03.10.)

베어링 고배당 증권투자회사(주식) [펀드코드 : 34158]

투자위험등급 : 3등급[다소높은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베어링 고배당 증권투자회사(주식)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베어링 자산운용(주)는 이 투자회사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투자위험등급을 3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투자자 유의사항	1.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간이투자설명서는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과거의 투자 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참조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회사 차관의 70% 이상을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종목에 투자 상대적으로 중시 변화에 따른 하향 리스크가 작고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기대되는 고배당 주식, 우량 우선주와 신형 우선주 등 고배당주에 주로 투자함 주식최대편입비율에 맞춰 주식에 투자함을 원칙으로 하며, 극단적이고 빈번한 자산배분 전략은 지양할 예정 		
분류	투자회사 / 증권(주식형) / 개방형(종도환매가능) / 추가형 / 종류형		
집합투자업자	베어링자산운용(주)		
모집[판매]기간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 가능	모집[매출]총액	투자회사의 수익증권 1조주
효력발생일	2018년 03월 21일	존속기간	별도로 정해진 존속기간 없음
판매회사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barings.com/ko) 참조		

종류(Class)	A	Ae	Ce	C-I	C-P	S	S-P
가입자격	제한없음	온라인투자자	온라인투자자	10억이상기관 5억이상개인 집합투자기구	연금저축가입자	펀드온라인 코리아	펀드온라인 연금저축가입자
판매수수료	납입액 1.0%이내 (선취)	납입액 0.5% 이내(선취)	-	-	-	3년미만환매, 환매금 0.15% 이내(후취)	-
환매수수료	없음						
보수 (연, %)	판매	1.0000	0.4000	0.5000	0.0300	0.7500	0.3500
	운용 등	집합투자업자보수 : 0.7000, 신탁업자보수 : 0.0400, 일반사무관리보수 : 0.0160					
	기타	0.0114	0.0125	0.0120	0.0109	0.0147	0.0125
	총 보수	1.7674	1.1685	1.2680	0.7969	1.5207	1.1185
							0.9696

※ 주식사항	<p>주1) C-W, P-F 종류의 수익증권에 관한 사항은 정식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p> <p>주2)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이 투자회사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년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p> <p>주3) 총보수·비용은 이 투자회사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또한 수익자는 증권거래비용, 기타 관리비용 등 총보수·비용 이외에 추가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p> <p>주4) 판매보수, 집합투자업자보수, 신탁업자보수, 일반사무관리보수는 매3개월 후 지급되고, 기타 및 증권거래비용은 사유 발생시 지급됩니다.</p>		
매입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오후3시30분</u> 이전 : 2영업일 기준가 매입 · <u>오후3시30분</u> 이후 : 3영업일 기준가 매입 	판매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오후3시30분</u> 이전 : 2영업일 기준가, 4영업일 지급 · <u>오후3시30분</u> 이후 : 3영업일 기준가, 4영업일 지급
기준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정방법 : (직전일의 자산총액 -부채총액)/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주수 ·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 (www.barings.com/ko),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 투자협회 (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이 투자회사는 회사 자산총액의 70% 이상을 주로 한국거래소 상장법인이 발행하는 국내주식 중 배당수익률이 높고 내재가치가 우수한, 집합투자업자가 판단하는 “고배당주” 기준에 부합되는 종목에 투자함으로써 주식시장 등락위험 노출을 최소화하여 중장기적으로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회사와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2. 투자전략

- 이 투자회사는 자산총액의 7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되, 상대적으로 증시변화에 따른 하향 리스크가 작고 안정적인 수익창출이 기대되는 고배당 주식, 우량 우선주와 신형 우선주 등 고배당주에의 투자는 투자회사 자산의 60%이상을 투자하여 시장과 차별화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며, 장기적으로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자본이익과 배당수익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 **투자대상 종목:** 베어링자산운용의 Valuation Model을 통해 발굴된 재무적 안정성과 성장성 및 가치가 확보된 Buying List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 중 배당수익률이 높고 내재가치가 우수한, 자산운용회사가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고배당주” 기준을 충족하는 종목

- 고배당주 선정기준

- >시장 평균 배당수익률 이상의 배당수익률이 기대되는 주식
- >과거 평균배당률이 안정적이거나 상승추세인 주식
- >배당성향이 인색하거나 과도하지 않은 주식
- >잉여 현금흐름이 대체로 (+)인 주식
- >대주주나 경영진이 주주이익을 중시하는 주식

상기 투자전략은 시장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비교지수: [KOSPI 100%]

3. 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2018.03.10)현재		주요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다른 운용 자산 규모	
최상현	1970	책임 운용역	11개(팀운용)	10,985억 (팀운용)	-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 한가람 투자자문 - 한화자산운용(구. 푸르덴셜) - 베어링자산운용(주) 주식운용팀(2013.02~)
김지영	1977	부책임 운용역	11개(팀운용)	10,985억 (팀운용)	- 연세대 경영학과 - PCA 투자신탁운용 - 슈로더 투자신탁운용 - 베어링자산운용(주) 주식운용팀 (2009.12~)

주) 운용전문인력이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협회 홈페이지 (dis.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투자실적 (연도별 수익률 추이)

연도	최근1년차	최근2년차	최근3년차	최근4년차	최근5년차
	2017.03.11 ~ 2018.03.10	2016.03.11 ~ 2017.03.10	2015.03.11 ~ 2016.03.10	2014.03.11 ~ 2015.03.10	2013.03.11 ~ 2014.03.10
종류A*	14.34	8.87	5.08	4.98	16.52
비교지수	17.26	6.50	-0.78	1.55	-2.57

주1) 비교지수: [(KOSPI X 100%)]

주2) 종류A(선취판매수수료 부과)의 수익률만 대표로 기재하였고,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률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3) 이 투자회사는 2014년 3월 4일 종류형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따라서 2014년 3월 이전 수익률은 종류 A가 아닌 베어링고배당증권투자회사(주식) 일반운용펀드 성과로 표시하였습니다.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1. 주요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회사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주식가격변동 위험	이 투자회사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동 주식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이 투자회사는 국내의 지정학적 위험 및 투자 증권의 가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관련 증권시장의 법령 및 제도의 급격한 변화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투자 위험	파생상품(선물, 옵션에의 투자)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금리변동위험	투자적격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을 가진 채무증권 등에 투자할 예정이나, 투자적격등급의 채무증권 등도 또한 리스크가 존재하고 채무증권 등의 금리변동에 따라 채무증권 등의 가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무증권 등의 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무증권 등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회사 규모위험	투자회사의 설정초기 또는 환매 등의 이유로 투자회사 규모가 일정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에는 투자회사에서 투자하는 투자대상자산의 편입 및 분산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 자산에 집중 투자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투자회사의 성과 및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특수위험과 기타투자위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위험 관리

이 투자회사는 주식최대편입비율에 맞춰 주식에 투자함을 원칙으로 하며, 극단적이고 빈번한 자산 배분 전략은 지양할 예정입니다. 또한 각종 시장 지표의 모니터링과 분석을 통하여 이 투자회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을 평가하여 운용전략위원회와 리스크관리위원회를 통해 의사결정 및 대응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 투자회사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III. 집합투자기구의 기타정보

1. 과세

개방형 투자회사 주식에 투자한 개인투자자가 투자회사 주식을 환매할 경우, 환매 시 이익은 장외 주식 양도에 의한 양도소득이 아니라 배당소득 (환매일의 발행가액에서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배당소득의 과세표준에는 투자회사 보유주식(상장 주식,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과 출자지분)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차익과 주가지수선물·옵션의 매매·평가 차익은 제외되며, 보유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보유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보유채권의 양도차익 등을 포함됩니다.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개인투자자의 당해 년도 이자 및 배당소득(투자회사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포함)의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당해 개인투자자는 종합소득신고의 의무를 지게 되나, 당해 년도 이자 및 배당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당해 개인투자자가 투자회사의 대주주(투자회사 지분의 1%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투자한 주주)인 경우에도 당해 투자회사의 배당수익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법인주주에 대한 과세 및 기타 과세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이 투자회사의 증권신고서 및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 없음

3. 집합투자기구의 요약 재무정보

재무정보는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 | |
|---------------|--|
| · 증권신고서 |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 · 투자설명서 |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 (kofia.or.kr), 집합투자업자 (www.barings.com/ko)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 · 정기보고서 |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 (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
| · 자산운용보고서 |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barings.com/ko) |
| · 수시공시 |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barings.com/ko)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베어링고배당 증권투자회사(주식)

투자회사의 명칭 (종류)	금융투자협회 편드코드
베어링고배당증권투자회사(주식)	34158
A	AO815
Ae	AO816
Ce	AO821
C-I	AO822
C-W	AO823
C-P	B4171
S	AO824
S-P	B4173
P-F	B6533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가. 형태별 종류: 투자회사
 - 나. 운용자산별 종류: 증권(주식형)
 -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개방형(판매가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추가형(추가로 자금납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 마. 특수형태 표시: 종류형(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
- 주)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의 투자대상과 투자전략’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 이 투자회사는 1조주까지 모집(판매) 가능하며 1주단위로 모집합니다. 다만, 모집(판매)기간이 별도로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모집(판매)이 가능합니다.

- 주1) 모집(판매)기간 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주2)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 가. 모집기간: 이 투자회사는 개방형 집합기구로 모집(판매)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 나. 모집장소: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barings.com/ko)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모집절차 및 방법: 영업일에 판매회사가 정한 기준으로 판매회사 창구를 통하여 모집판매합니다.

- 주)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매입, 판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베어링 고배당 증권 투자회사(주식)

투자회사의 명칭 (종류)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베어링고배당증권투자회사(주식)	34158
A	AO815
Ae	AO816
Ce	AO821
C-I	AO822
C-W	AO823
C-P	B4171
S	AO824
S-P	B4173
P-F	B6533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 시행일	변경 사항
2002.03.11	세이고배당주식형펀드 설립
2002.03.29	금융감독원에 등록
2004.06.22	세이고배당주식형투자회사로 상호변경
2004.11.29	정관 개정
2005.06.07	정관 개정
2006.02.14	정관 개정
2006.04.13	정관 개정
2006.06.30	정관 개정
2008.10.21	정관 개정
2009.05.03	정관 개정
2010.05.03	정관 개정(판매보수인하)
2011.06.07	정관 개정(이익분배조항 수정)
2013.04.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펀드명 변경 (세이고배당증권투자회사(주식) → 베어링고배당증권투자회사(주식)) - 사명 변경 (세이에셋코리아자산운용주식회사 → 베어링자산운용주식회사) - 「금감원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2012.08.01 발표> 내용반영 - 홈페이지 주소변경(www.seiak.com → www.barings.com/ko) - 법 개정사항 반영 - 책임운용역 및 부책임 운용역 추가 - 자구한 문구 수정 및 내용 업데이트
2013.05.09	- 결산업데이트
2013.11.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용전문인력 변경 (책임/부책임: 김재동/최상현 → 최상현/김지영) - 차본시장법 및 세법 개정내용 반영 - 내용 업데이트 및 오기정정

2014.03.04	- 종류형 전환 - 클래스 신설 - 내용 업데이트
2015.04.24	- 결산업데이트 - 범개정사항 반영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사항 반영
2015.06.15	- 클래스 추가 (Class C-P/ S-P) - 채권투자회사추가
2015.08.06	- 클래스 추가 (Class P-F)
2016.03.30	- 환매수수료 삭제 - 결산업데이트 - 차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2016.07.02	- 투자위험등급 분류체계 개편 내용 반영
2016.07.30	- 판매 및 환매의 기준시점 변경
2016.08.26	- 오기정정
2017.03.28	- 투자위험등급 변경
2017.07.18	- 결산업데이트
2018.03.21	- 투자위험등급 변경(4 등급 =>3 등급)

3. 집합투자기구의 존속기간

이 집합투자기구는 존속기간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집합투자기구의 존속기간은 투자가가 투자하고자 하는 기간(저축만기)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 법령 또는 정관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산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5부의 투자회사의 해산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가. 명칭: 베어링자산운용주식회사

나.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9, 7층 (02-3788-0500)

주)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의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

가. 운용전문인력 현황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2018.03.10) 현재		주요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다른 운용 자산 규모	
최상현	1970	책임 운용역	11개(팀운용)	10,985억 (팀운용)	- 서울대 경제학 - 한가람 투자자문 - 한화자산운용(구. 푸르덴셜) - 베어링자산운용(주) 주식운용팀 (2013.04~)

김지영	1977	부책임 운용역	11개(팀운용)	10,985억 (팀운용)	- 연세대 경영학과 - PCA 투자신탁운용 - 슈로더 투자신탁운용 - 베어링자산운용(주) 주식운용팀 (2009.12~)
-----	------	---------	----------	------------------	--

주1) 운용 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없음

주2)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및 규모를 산정할 때 모자형구조의 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합니다

주3) 운용전문인력이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협회 홈페이지 (dis.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최근 3년간 운용전문인력 변동사항

책임운용역	운용기간	부책임 운용역	운용 기간
최상현	2013.11.29 ~ 현재	김지영	2013.11.29 ~ 현재

주1) 작성일 기준 최근 3년간 책임운용인력 및 부책임 운용인력 변경 내역입니다.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투자회사, 증권(주식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나. 종류형 구조

베어링 고배당증권투자회사(주식)

Class A	Class Ae	Class Ce	Class C-I	Class C-W	Class C-P	Class S	Class S-P	Class P-F
---------	----------	----------	-----------	-----------	-----------	---------	-----------	-----------

이 집합투자기구는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이 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식 종류별 가입자격

구분	최초설정일	가입자격
Class A	2002.04.22	투자자에 대한 자격제한 없음 (선취판매수수료 징구)
Class Ae	2014.03.10	온라인 투자자 (선취판매수수료 징구)
Class Ce	2014.03.10	온라인 투자자 (선취판매수수료 미징구)
Class C-I	2014.09.03	거치식 혹은 총납입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기관투자자 혹은 적립식 납입금액이 5억 이상인 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집합투자기구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주식
Class C-W	2014.04.28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관리계좌(Wrap Account)를 통하여 투자하는 가입자/신탁업자/특별계정의 신탁업자(선취판매수수료 미징구)
Class C-P	2015.07.20	연금저축 계좌 가입자
Class S	2014.04.22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증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 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

		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증권
Class S-P	2015.06.29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 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음.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음
Class P-F	2015.10.30	소득세법 제 20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 계좌를 통하여 집합투자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회사는 회사 자산총액의 70% 이상을 주로 한국거래소 상장법인이 발행하는 국내주식 중 배당수익률이 높고 내재가치가 우수한, 집합투자업자가 판단하는 “고배당주” 기준에 부합되는 종목에 투자함으로써 주식시장 등락위험 노출을 최소화하여 중장기적으로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회사와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설명
1. 주식 (주식-국내 증권시장에서 상장되어 거래되는 주식에 한함)	70% 이상 (단, 고배당주에의 투자는 주식편입비의 60%이상)	-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 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한다. 이하 “주식”) - 상기에서 정의된 “주식” 중 직전 회계연도 결산배당금 기준 배당수익률이 한국거래소 시장의 평균 배당수익률 이상인 주식을 “고배당주”라 한다
2. 양도성예금증서(CD)	40%이하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발행 또는 중개한 양도성예금증서
3. 집합투자증권 등	5%이하	-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 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는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
4. 증권의 대여	증권총액의 50% 이하	회사 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의 대여
5. 증권의 차입	20%이하	주식, 양도성예금증서의 차입
6. 장내파생상품에의 투자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 평가액 회사 자산 총액의 10% 이하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이나 주식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7. 기타	법 시행령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가능	
* 투자비율 적용 예외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음. 1.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	

	<p style="text-align: center;">우를 말한다.)</p> <p>- 위 투자대상 중 1호 내지 2호의 거래에 있어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3) 및 4)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p> <p>1) 회사 설립 후 최초운용개시일로부터 1월간</p> <p>2) 사업년도 종료일 또는 해산일 이전 1월간</p> <p>3)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신주발행 또는 주식의 환매청구가 각각 회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p> <p>4) 회사자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p>
--	---

나. 투자제한

구 분	내 용	적용 제외
단기대출	<p>회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 84 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p> <p>가. 법 제 83 조제 3 항에 따른 단기대출</p> <p>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p>	
동일종목 증권	<p>회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 80 조제 3 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p> <p>가. 금융투자업규정 제4-52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 집합 투자 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회사 자산 총액의 2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나.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한다</p>	최초설정 일로부터 1 개월간
동일회사 발행주식	회사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파생상품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회사 자산 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 일로부터 1 개월간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회사자산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을 포함한 회사재산 총위험 평가액이 회사 자산총액의 100%를 초과하는 행위	
계열회사 발행주식	법 시행령 제 86 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 일부환매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기 가. 투자대상의 3호 내지 6호, 나. 투자제한의 동일종목증권, 동일회사발행주식, 파생상품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 회사 성립 후의 최초 운용개시일로부터 1월간은 상기 가. 투자대상의 6호, 나. 투자제한의 동일종목증권 본문 및 파생상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주) 투자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령 및 정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운용전략 및 투자방침

- 이 투자회사는 자산총액의 7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되, 상대적으로 증시변화에 따른 하향 리스크가 작고 안정적인 수익창출이 기대되는 고배당 주식, 우량 우선주와 신형 우선주 등 고배당주에의 투자는 투자회사 자산의 60%이상을 투자하여 시장과 차별화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며, 장기적으로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자본이익과 배당수익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 **투자대상 종목:** 베어링자산운용의 Valuation Model을 통해 발굴된 재무적 안정성과 성장성 및 가치가 확보된 Buying List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 중 배당수익률이 높고 내재가치가 우수한, 자산운용회사가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고배당주” 기준을 충족하는 종목
- **고배당주 선정기준**
 - >시장 평균 배당수익률 이상의 배당수익률이 기대되는 주식
 - >과거 평균배당률이 안정적이거나 상승추세인 주식
 - >배당성향이 인색하거나 과도하지 않은 주식
 - >잉여 현금흐름이 대체로 (+)인 주식
 - >대주주나 경영진이 주주이익을 중시하는 주식

※ 상기 투자전략은 시장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위험관리 전략

- 주식 최대편입비율에 맞춰 주식에 투자함을 원칙으로 하며,
- 극단적이고, 빈번한 자산배분 전략은 지양

(3) 비교지수

이 투자회사는 집합투자신탁 재산의 7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운용 전략에 의한 결과와 시장수익률과의 공정한 비교를 위해 아래의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비교지수가 변경될 경우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비교지수: KOSPI 100%]

KOSPI(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는 1980년 1월 4일 당시 한국의 유가증권 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 전체의 시가총액의 합을 100으로 하여 현재시점의 시가총액이 얼마인가를 나타냅니다. 지수는 주가의 변화만을 반영해야 하므로 유무상 증자 등 주식수의 증감으로 발생하는 변동은 제거하는 방식으로 매일 한국증권전산(KOSCOM)에서 제공됩니다.

나. 수익구조

이 투자회사는 주로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이 투자회사에서 투자한

국내 주식의 가격변동, 이자 및 배당수익에 따라 투자자의 수익률이 주로 결정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회사는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회사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가. 일반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회사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주식가격변동위험	이 투자회사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동 주식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이 투자회사는 국내의 지정학적 위험 및 투자 증권의 가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관련 증권시장의 법령 및 제도의 급격한 변화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투자위험	파생상품(선물, 옵션에의 투자)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금리변동위험	투자적격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을 가진 채무증권 등에 투자할 예정이나, 투자적격등급의 채무증권 등도 또한 리스크가 존재하고 채무증권 등의 금리변동에 따라 채무증권 등의 가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무증권 등의 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무증권 등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거래상대방 및 신용 위험	보유하고 있는 국내외 유가증권 등을 발행한 회사가 신용등급의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에 노출되는 경우 그 유가증권 등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회사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회사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위험	투자회사 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거나 환매에 응하는 것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투자회사 규모위험	투자회사의 설정초기 또는 환매 등의 이유로 투자회사 규모가 일정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에는 투자회사에서 투자하는 투자대상자산의 편입 및 분산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 자산에 집중 투자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투자회사의 성과 및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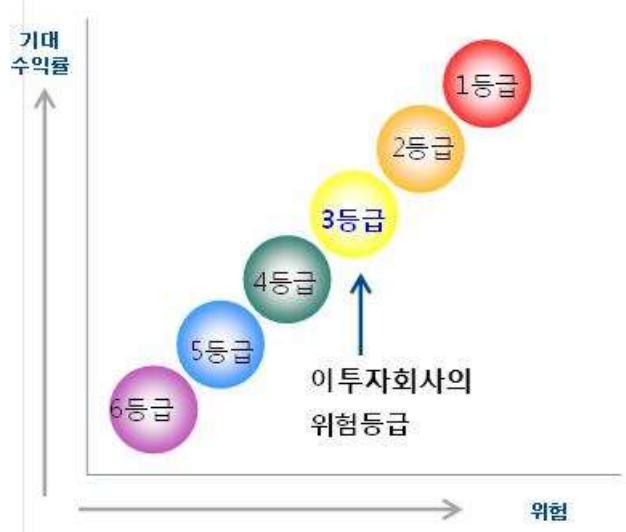
투자회사 해산위험	투자회사가 최저순자산액이 10억원에 미달하고 3개월이 경과될 때까지 순자산액이 10억 미달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등록을 취소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사전동의 없이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해산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회사는 존속기간의 만료 그 밖의 해산사유의 발생/주주총회의 결의/폐흡수합병/파산/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투자회사 등록의 취소 등의 사유로 해산 될 수 있습니다.
기타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 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 기준가격 적용일까지의 회사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회사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 경제상황 및 정부의 조치, 세계의 변경 등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예상하지 못한 가치하락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회사는 국내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따라서 경제상황의 변화 및 주식시장변동에 연동되어 원금손실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회사는 설정 후 3년이 경과하여 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산정하였습니다. 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출한 실제 연환산 표준편차는 10.41 %로 이 투자회사는 **6단계 등급 체계** 중 **3등급**에 해당되는 **다소높은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투자회사는 국내외 경제여건 변화와 이에 따른 국내 주식시장의 위험을 인지하고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 수익률 변동성은 자산의 가격이 변화하는 정도를 나타내며 수익률이 급등락할수록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수익률의 변화폭이 작을수록 변동성은 낮게 나타납니다. 변동성은 대상기간 중 수익률의 표준편차로 계산됩니다.

※ 이 투자회사는 설정 후 3년이 경과하여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부여하였습니다. 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출한 이 투자회사의 실제 연환산 표준편차는 **10.41%** 입니다. 변동성에 따른 위험등급 분류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수익률 변동성은 매년 결산시점에 측정하며 해당 결산일 기준 3년간 펀드의 주간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를 바탕으로 합니다.

※ 추후에도 매 결산 시마다 변동성을 재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베어링자산운용 자체 투자위험등급 기준표 (연환산 표준편차 기준)>

등급	1 매우높은 위험	2 높은위험	3 다소높은 위험	4 보통위험	5 낮은위험	6 매우낮은 위험
표준편차	25%초과	25%이하	15%이하	10%이하	5%이하	0.5%이하

* 다만 금융투자협회 표준투자권유준칙 및 각 판매회사의 자체 상품위험등급에 따라 각 판매회사는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위의 투자위험등급과 상이한 투자위험등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판매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매입, 판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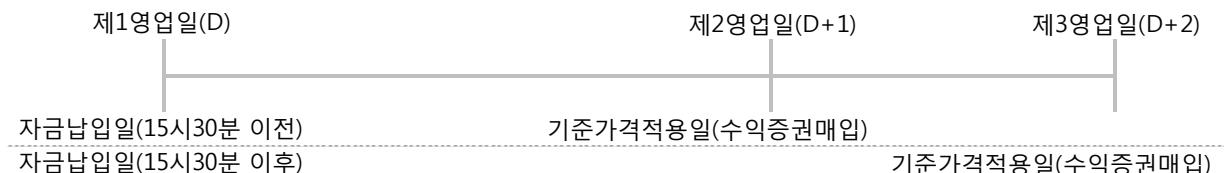
(1) 매입방법, 절차, 가능시간

이 투자회사의 주권을 취득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영업시간 중에 매입을 하셔야 합니다.

(2) 매입청구 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① 오후 3시30분 이전 청약을 신청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 영업일에 발표하는 주권의 기준가격 적용

② 오후 3시30분 경과 후 청약을 신청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주권의 기준가격 적용



* 판매회사가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매입업무를 처리한 경우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을 매입청구를 받은 시간으로 봅니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 이 경우 영업일은 판매회사 영업일(다만, 토요일은 제외)을 말합니다.

* 단, 이 투자회사를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회사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주를 1원으로 하여 1,000원으로 합니다.

(3) 신원확인자료 및 자금세탁 방지

자금세탁방지와 관련된 규정과 지침을 준수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증권의 매입신청인은 신원확인을 위한 자료(법인의 경우 법인의 법적 실체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 받을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의 매입신청인이 타인의 대리인인 경우, 매입신청인은, 당사자 본인의 신원확인을 위한 자료 또는 매입신청인이 당사자 본인의 신원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였고 자금의 출처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있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인서 제출을 요청 받게 됩니다. 이러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의 매입신청인이 신원확인자료 또는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신청인의 매입신청은 거절됩니다.

신탁업자,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는 환매대금의 지급이 자금세탁방지 기타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통지 받거나 의심되는 수익자의 환매대금 지급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4) 마켓타이밍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마켓타이밍 또는 이와 관련된 과도한 매매, 단기매매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마켓타이밍은 집합투자기구의 순자산가치의 산정방법의 불완전성, 결함 또는 시차를 이용하는 동일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단기간의 매입, 환매행위를 의미합니다. 수익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는 그 재량에 의하여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마켓타이밍 행위를 하거나 마켓타이밍 행위를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투자자의 집합투자증권 매입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5) 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이 투자회사의 수익증권은 베어링자산운용의 서면 승인이 없이는 미국인을 대상으로 모집하거나 미국인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본 항목에 있어 '미국인'은 다음의 자를 의미합니다.

-미국 시민 또는 미국 연방세법상 거주외국인인 개인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거주외국인'은 (i) 미국이민귀화국(U.S.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이 발급한 영주권(Alien Registration Card)을 소지하거나, (ii) 실질체류(Substantial Presence) 기준을 충족한 자를 의미합니다. 실질체류(Substantial Presence) 기준은 (i) 해당 연도에 31일 이상 미국에 체류하거나, (ii) 해당 연도를 포함해 3년 동안 183일(단, 직전 연도 체류일은 1/3을, 전전 연도 체류일수는 1/6을 인정하여 합산) 이상 체류한 경우에 충족하게 됩니다.

-미국 또는 미국의 제 주 또는 하위 행정구역(컬럼비아 특별구 포함)의 법에 의해 설립되거나 조직된 법인, 조세목적상 법인으로 간주되는 단체, 파트너쉽 등을 의미합니다. 단, 미국 재무규정(Treasury Regulations)상 미국인으로 취급되지 않는 파트너쉽은 제외합니다.

-소득 출처에 관계없이 모든 소득이 미국 연방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는 재단을 의미합니다.

-미국법원이 일차적인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고 1인 이상의 미국인이 중요결정권을 행사하는 신탁 또는 1996. 8. 20.에 존재하였으며 1996. 8. 19.에 내국신탁으로 취급되었던 선택신탁을 의미합니다.

나. 환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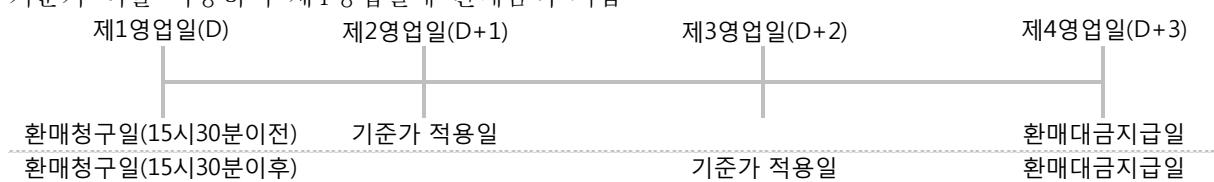
(1) 환매방법, 절차, 가능시간

이 투자회사 주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환매 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① 오후 3시30분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2영업일의 주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② 오후 3시30분 경과 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의 주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 판매회사가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환매업무를 처리한 경우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을 환매청구를 받은 시간으로 봅니다

※ 영업일은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을 말합니다. 다만, 환매청구일이 판매회사의 영업일이면서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토요일은 제외)에는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3) 환매수수료

이 집합투자기구는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습니다.

(4)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회사 주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15시30분[오후 3시30분]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5시30분[오후 3시30분] 경과 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청구 또는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5) 일부환매

주주(투자자)는 보유한 주권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주가 주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 판매회사는 그 주권을 환매하고, 잔여 주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주권을 교부합니다.

(6) 환매제한

회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상법 제3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의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과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② 해산한 경우
- ③ 회사의 순자산액이 1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 ④ 결산일 직전 제2영업일에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 ⑤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된 경우

(7) 환매연기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회사는 주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회사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주주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주주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사유

- ① 투자회사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② 주주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환매를 청구 받거나 요구받은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해산 등으로 인하여 주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 ④ ① 또는 ③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회사 주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8) 부분환매

-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주주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정상자산)에 대하여는 주주가 보유하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 ② 부분환매가 결정된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가 부분환매를 결정한 날(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한 경우에는 그 날)의 전일을 기준으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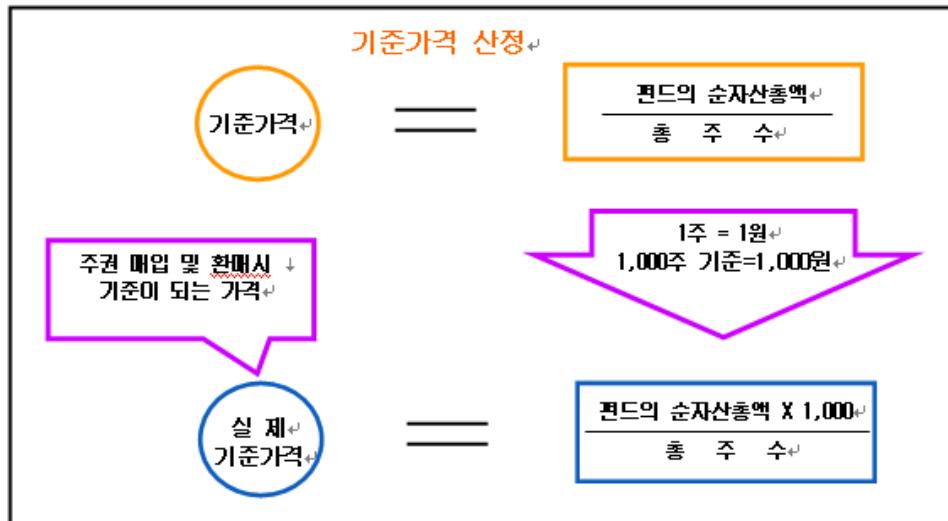
- ③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한 경우에는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만으로 별도의 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주는 이 집합투자기구 주식의 보유주수에 따라 별도의 집합투자기구의 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④ 집합투자업자가 부분환매를 결정한 경우에는 관련내용을 자체없이 주주,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및 판매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판매회사는 통지 받은 내용을 본지점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기준가격 산정방법	당일발표하는 기준가격은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회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가치)을 직전일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주 단위로 원미만 셋째 자리에서 4자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기준가격 산정주기	매일
기준가격 공시시기	매일
기준가격 공시방법	전자공시
기준가격 공시장소	집합투자업자(www.barings.com)·판매회사 홈페이지, 판매회사 각 영업점

주1) 공휴일, 국경일 등 집합투자업자가 영업을 하지 않는 날에는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 (1)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①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②비상장 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이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③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
④장외파생상품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과 당해 장외파생상품 발행 또는 계산회사가 제시하는 가격 및 금융감독위원회에 기제출한 평가방법에 따라 계산된 가격을 기초로 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

⑤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정
⑥ 비상장채권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상기 상장채권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상장채권을 포함)
⑦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⑧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2)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업무

- ① 구성: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 담당임원,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 담당임원, 준법감시인 등
 ② 업무: 법제238조제3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의 적용여부 등 집합투자재산평가에 관한 사항을 반기마다 이사회에 보고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 이 투자회사는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됩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판매회사는 판매보수 및 수수료와 관련하여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하고 설명하여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분 (Class)	수수료 (지급비율 또는 지급금액)			
	선취판매	후취판매	환매	전환
A	납입액의 1.0% 이내	-	-	-
Ae	납입액의 0.5% 이내	-	-	-
Ce	-	-	-	-
C-I	-	-	-	-
C-W	-	-	-	-
C-P	-	-	-	-
S	-	3년 미만 환매시 환 매금액의 0.15% 이내	-	-
S-P	-	-	-	-
P-F	-	-	-	-
지급시기	매입시	환매시	환매시	전환시

주1)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는 상기 범위내에서 판매회사가 정합니다. 판매회사가 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적용 1일 전까지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합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Class)	지급비율 (연간, %)						
	집합투자 업자보수	판매회사 보수	신탁업자 보수	일반사무 관리 보수	기타비용	총보수 수비용	증권 거래비용
A	0.7000	1.0000	0.0400	0.0160	0.0114	1.7674	0.1321
Ae	0.7000	0.4000	0.0400	0.0160	0.0125	1.1685	0.1198
Ce	0.7000	0.5000	0.0400	0.0160	0.0120	1.2680	0.1247
C-I	0.7000	0.0300	0.0400	0.0160	0.0109	0.7969	0.1387
C-W	0.7000	-	0.0400	0.0160	0.0124	0.7684	0.1214
C-P	0.7000	0.7500	0.0400	0.0160	0.0147	1.5207	0.0966
S	0.7000	0.3500	0.0400	0.0160	0.0125	1.1185	0.1207
S-P	0.7000	0.2000	0.0400	0.0160	0.0136	0.9696	0.1055
P-F	0.7000	0.0300	0.0400	0.0160	0.0094	0.7954	0.1545
지급시기	매 3개월 후급				사유발생 시	사유발생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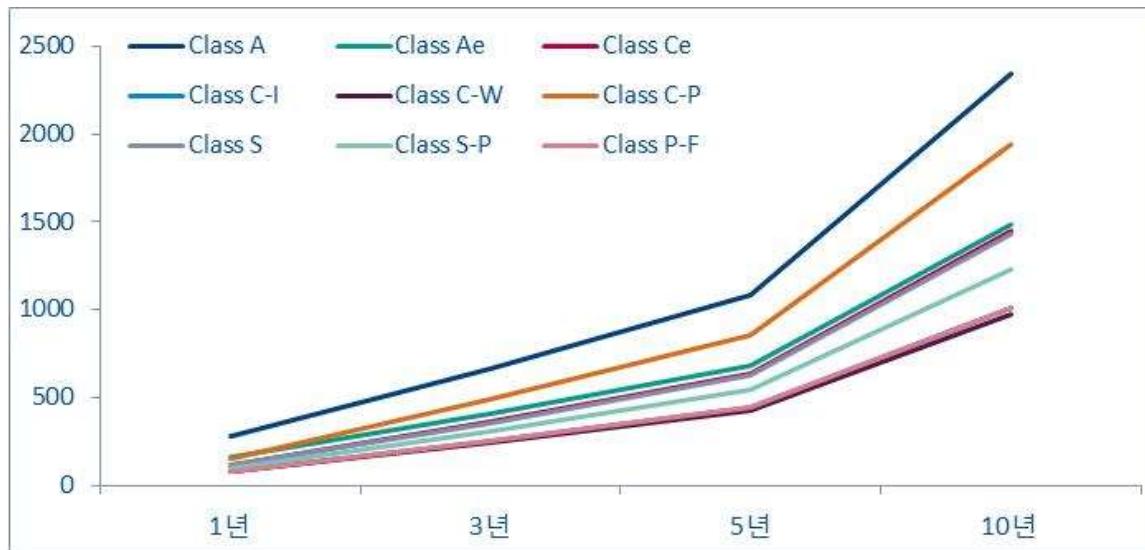
주 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 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으로서 회사의 직전 회계년도 기타비용비율을 추정하여 사용하였으며 이는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 2) 증권거래비용은 직전 회계년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다른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클래스/기간	1년	3년	5년	10년
Class A	278	662	1,084	2,341
Class Ae	168	422	701	1,533
Class Ce	129	406	711	1,619
Class C-I	81	254	445	1,013
Class C-W	77	244	428	974
Class C-P	154	487	853	1,941
Class S	113	357	626	1,426
Class S-P	98	309	541	1,232
Class P-F	81	254	445	1,013

주1) 투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판매수수료율 및 총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 배분

투자회사는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회사 회계기간 종료 시에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하는 투자회사 주권으로 분배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

(1) 이익분배금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매수

- 주주는 주주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주권을 매수합니다.

(2) 분배금 등의 지급

- 회사가 이익금 전액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 분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수, 발행시기 등 주식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회사는 이익금을 초과하여 금전으로 분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배금은 순자산총액에서 최저 순자산액을 공제한 금액 범위내로 하며. 이익금을 초과하여 금전으로 분배할 경우 기준가격의 하락 또는 보유주수의 감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투자회사의 결산에 따른 결산분배금 또는 해산 및 청산에 따른 청산분배금의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분배금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주주에게 지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판매회사는 신탁업자로부터 인도받은 분배금 등을 지체없이 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청산일 현재 투자회사 자산인 증권 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분배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분배금의 시효

- 투자회사의 결산분배금 또는 청산분배금은 주주가 그 지급개시일로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회사에 귀속됩니다.
- 신탁업자가 분배금 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주주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음 설명은 본 투자설명서의 작성일 당시의 세금관련 내용으로 국내법과 국내의 세무관행에 근거한 것 입니다. 따라서 그 내용 및 해석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세에 관한 설명은 이 투자회사의 수익증권을 매입한 수익자가 한국에 거주하는 개인임을 전제로하여 작성된 것으로 과세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를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투자회사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모든 유형의 투자자들의 과세결과를 설명하지 않을 수 있음으로 투자자 개인의 과세와 관련하여

다음에 내용에 전적으로 의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회사 단계에서의 과세와 주주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회사에 대한 과세

- 회사가 각 결산기에 발생한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주주에 대한 과세 및 세율

<개인주주에 대한 과세>

1) 배당소득세

- 개방형 투자회사 주식에 투자한 개인투자자가 투자회사 주식을 환매할 경우, 환매 시 이익은 장외주식 양도에 의한 양도소득이 아니라 배당소득 (환매일의 발행가액에서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배당소득의 과세표준에는 투자회사 보유주식(상장 주식,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과 출자지분)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차익과 주가지수선물·옵션의 매매·평가 차익은 제외되며, 보유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보유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보유채권의 양도차익 등은 포함됩니다.
-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2)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개인투자의 당해 년도 이자 및 배당소득(투자회사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포함)의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당해 개인투자자는 종합소득신고의 의무를 지게 되나, 당해 년도 이자 및 배당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당해 개인투자가 투자회사의 대주주(투자회사 지분의 1%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투자한 주주)인 경우에도 당해 투자회사의 배당수익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법인 주주에 대한 과세>

- 법인주주가 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동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 법인주주는 일반 법인세율로 과세되고 배당세액공제도 협용되지 않습니다

3)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 Class C-P, S-P, P-F 가입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이 투자회사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이 투자회사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관련 주요 사항]

구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 만원 한도 (퇴직연금 및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단 이연퇴직소득 및 다른 연금계좌로부터 이체받은 금액은 제외)
수령요건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세액공제	연간 연금저축 계좌에 납입한 400 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산하여 연 700 만원 한도로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함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 ~ 3.3%(나이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단, 이연퇴직소득은 3.3% (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한도	1,200 만원(공적연금소득 제외)
연금외수령시과세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종합과세 가능) 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
해지가산세	없음
부득이한 연금외수령 사유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 개월 이상 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부득이한 연금외수령시 과세	기타소득 13.2%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종합과세 가능)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가격: 집합투자기구(펀드)의 투자원금에 운용성과를 반영한 금액으로서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 시 적용됩니다

※ 과표기준가격: 펀드의 투자원금 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운용성과만을 더하거나 차감하여 계산된 것으로서, 환매 또는 이의분배 시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할 때 적용됩니다. 과표기준가격은 비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한 투자손익이 (-)/손실인 경우에도 투자자는 과세를 당할 수 있습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주주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주주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주는 투자회사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15. 발기인·감독이사에 관한 사항

가. 발기인에 관한 사항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요경력	소유주식수	결격요건 해당여부
베어링자산운용(주)	116-81-34269	투자회사의 법인이사	-	해당사항 없음

나. 감독이사에 관한 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요경력	결격요건 해당여부
김영규	1949년9월21일	- Texas Tech 경영학 박사 - 성균관대학교 경영학 교수	해당사항 없음
김영덕	1947년1월1일	- 美 서던캘리포니아대 경영대학원 - (주)온미디어 감사	해당사항 없음

다. 감독이사의 보수지급기준 : 매월 30만원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회사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13기	안진회계법인	적정
14기	안진회계법인	적정
15기	안진회계법인	적정

가. 요약재무정보

요약재무정보	제 14 기	제 14 기	제 13 기
	20170310	20160310	20150310
I .운용자산	129,685,088,761	250,516,088,976	423,258,693,707
증권	127,543,312,320	240,833,312,780	414,495,160,135
현금 및 예치금	141,776,441	682,776,196	3,763,533,572
기타운용자산	2,000,000,000	9,000,000,000	5,000,000,000
II. 기타자산	8,074,156,588	6,576,306,526	20,229,302,260
자산총계	137,759,245,349	257,092,395,502	443,487,995,967
II. 기타부채	2,057,440,353	2,193,232,924	4,531,378,357
부채총계	2,057,440,353	2,193,232,924	4,531,378,357
I. 원본	124,447,340,172	243,650,858,230	420,701,856,225
II. 수익조정금	-2,679,739,929	-11,128,292,937	19,552,784,526
III. 이익잉여금	13,934,204,753	22,376,597,285	-1,298,023,141
자본총계	135,701,804,996	254,899,162,578	438,956,617,610
I . 운용수익	16,543,887,982	27,989,532,180	3,725,822,655
이자수익	1,802,812	6,558,256	396,243,466
배당수익	3,791,080,122	6,105,600,642	9,209,313,540
매매/평가차익(순)	12,666,875,916	21,675,894,528	-5,959,796,857
기타이익	84,129,132	201,478,754	80,062,506
II. 운용비용	2,609,643,015	4,485,807,055	5,023,842,725
관련회사보수	2,588,767,396	4,463,382,664	4,997,771,855
기타비용	20,875,619	22,424,391	26,070,870
III. 당기 순이익	13,934,244,967	23,503,725,125	-1,298,020,070
* 매매회전율	109	125	36
* 매매수수료	215,036,850	456,356,210	534,882,410

주1)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 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1회계연도 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 규모가 100억 원이고, 주식 매도금액 또한 100억 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입니다.

주2) 매매회전율 변동에 관한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주3)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는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주수 (백만주)	금액 (백만원)	주수 (백만주)	금액 (백만원)	주수 (백만주)	금액 (백만원)	주수 (백만주)	금액 (백만원)
20140311 - 20150310	80,727	80,727	550,603	587,619	218,643	231,172	412,688	437,174
20150311 - 20160310	412,688	412,688	139,449	143,148	312,873	327,922	239,264	227,913
20160311 - 20170310	239,264	239,264	117,550	121,809	233,799	241,343	123,015	119,730

Class A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주수 (백만주)	금액 (백만원)	주수 (백만주)	금액 (백만원)	주수 (백만주)	금액 (백만원)	주수 (백만주)	금액 (백만원)
20140311 - 20150310	80,728	80,728	497,736	527,759	214,407	224,747	377,241	396,924
20150311 - 20160310	377,241	377,241	76,477	79,196	277,907	290,329	194,520	184,818
20160311 - 20170310	194,520	194,520	73,920	76,037	179,186	184,053	98,899	96,149

주) 제13기 결산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주수(금액) : 13,183,948,313주(13,183,948,313원)

제14기 결산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주수(금액) : 18,709,078,660주(18,709,078,660원)

제15기 결산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주수(금액) : 9,644,432,702주(9,644,432,702원)

Class Ae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주수 (백만주)	금액 (백만원)	주수 (백만주)	금액 (백만원)	주수 (백만주)	금액 (백만원)	주수 (백만주)	금액 (백만원)
20140311 - 20150310	0	0	3,468	3,669	680	712	2,788	2,957
20150311 - 20160310	2,788	2,788	1,911	1,962	2,144	2,227	2,691	2,659
20160311 - 20170310	2,691	2,691	5,823	6,122	3,916	4,081	4,746	4,881

주) 제14기 결산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주수(금액) : 135,755,494주(135,755,494원)

제15기 결산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주수(금액) : 148,563,228주(148,563,228원)

Class Ce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주수 (백만주)	금액 (백만원)	주수 (백만주)	금액 (백만원)	주수 (백만주)	금액 (백만원)	주수 (백만주)	금액 (백만원)
20140311 -	0	0	4,641	4,962	652	687	3,990	4,275
20150310 -	3,990	3,990	685	707	3,129	3,212	1,735	1,674
20160310 -	1,735	1,735	2,313	2,429	1,909	1,974	2,233	2,283
20170310								

주) 제14기 결산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주수(금액) : 188,819,377주(188,819,377원)

제15기 결산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주수(금액) : 93,969,597주 (93,969,597원)

Class C-I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주수 (백만주)	금액 (백만원)	주수 (백만주)	금액 (백만원)	주수 (백만주)	금액 (백만원)	주수 (백만주)	금액 (백만원)
20140903 -	0	0	30,976	30,004	4	4	30,973	30,000
20150310 -	30,973	30,973	36,087	35,000	25,690	25,843	41,370	40,130
20160310 -	41,370	41,370	14,950	15,575	44,538	45,365	12,476	12,274
20170310								

주) 제15기 결산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주수(금액) : 693,810,830주(693,810,830원)

Class C-W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주수 (백만주)	금액 (백만원)	주수 (백만주)	금액 (백만원)	주수 (백만주)	금액 (백만원)	주수 (백만주)	금액 (백만원)
20140428 -	0	0	7,966	8,456	3,612	3,773	4,354	4,683
20150310 -	4,354	4,354	243	260	2,705	2,793	2,106	2,036
20160310 -	2,106	2,106	2,674	2,773	2,575	2,728	2,334	2,280
20170310								

주) 제14기 결산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주수(금액) : 214,356,132주(214,356,132원)

제15기 결산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주수(금액) : 128,944,935주(128,944,935원)

Class C-S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주수 (백만주)	금액 (백만원)	주수 (백만주)	금액 (백만원)	주수 (백만주)	금액 (백만원)	주수 (백만주)	금액 (백만원)

20140422 -	0	0	1,781	1,848	425	433	1,356	1,415
20150311 -	1,356	1,356	580	600	1,130	1,170	848	827
20160311 -	848	848	1,633	1,717	888	921	1,640	1,691
20170310								

주) 제14기 결산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주수(금액) : 41,694,351주(41,694,351원)

제15기 결산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주수(금액) : 47,069,621주(47,069,621원)

Class S-P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주수 (백만주)	금액 (백만원)	주수 (백만주)	금액 (백만원)	주수 (백만주)	금액 (백만원)	주수 (백만주)	금액 (백만원)
20150629 -	0	0	34	33	2	2	32	31
20160310								
20160311 -	32	32	552	574	125	130	459	476
20170310								

Class C-P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주수 (백만주)	금액 (백만원)	주수 (백만주)	금액 (백만원)	주수 (백만주)	금액 (백만원)	주수 (백만주)	금액 (백만원)
20150720 -	0	0	38	37	2	2	35	35
20160310								
20160311 -	35	35	1,865	1,960	242	254	1,659	1,742
20170310								

주) 제15기 결산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주수(금액) : 673,917주(673,917원)

Class P-F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주수 (백만주)	금액 (백만원)	주수 (백만주)	금액 (백만원)	주수 (백만주)	금액 (백만원)	주수 (백만주)	금액 (백만원)
20151030 -	0	0	313	314	0	0	313	314
20160310								
20160311 -	313	313	141	143	462	472	0	-8
20170310								

주) 제15기 결산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주수(금액) : 8,419,790주 (8,419,790원)

3. 투자회사의 출자금에 관한 사항**가. 출자지분의 총수**

발행할 출자지분의 총수	발행한 출자지분의 총수	미발행 출자지분의 총수
1조주	1억주	9,999억주

나. 발행한 출자지분의 내용

구분	출자자	종류	발행한 지분의 총수	발행가액 총액
투자회사 주권	베어링자산운용	기명식 보통주식, 무액면	1억주(1주당1원)	1억원

4.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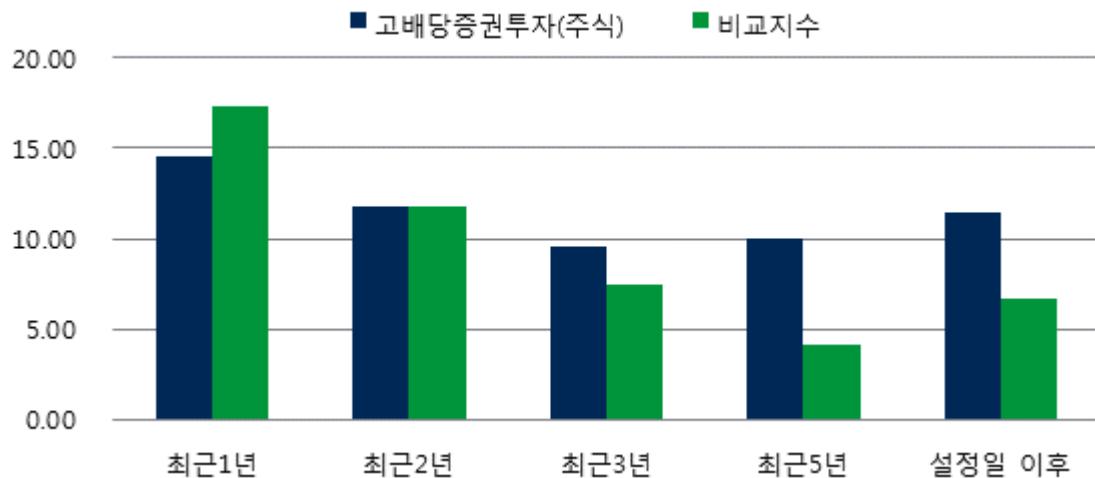
가. 연평균 수익률(세전 기준)

연도	최근1년 2017.03.11 ~ 2018.03.10	최근2년 2016.03.11 ~ 2018.03.10	최근3년 2015.03.11 ~ 2018.03.10	최근5년 2013.03.11 ~ 2018.03.10	설정일 이후 2002.03.11 ~ 2018.03.10
	(단위 : %)				
투자회사	14.50	11.74	9.52	9.96	11.42
Class A	14.34	11.57	9.36		8.21
Class Ae	15.02	12.23	10.02		8.72
Class Ce	14.90	12.12	9.91		8.61
Class I	15.44	12.64	10.42		7.67
Class W	15.48	12.68	10.45		9.38
Class S	15.08	12.29	10.07		8.57
Class S-P	15.25	12.45			9.03
Class C-P	14.62	11.84			9.61
Class P-F	0.00	1.78			2.65
비교지수	17.26	11.75	7.41	4.16	6.66

주1) 연평균 수익률은 과세전 수익률이며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2) 연평균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증권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비교지수 : KOSPI 100%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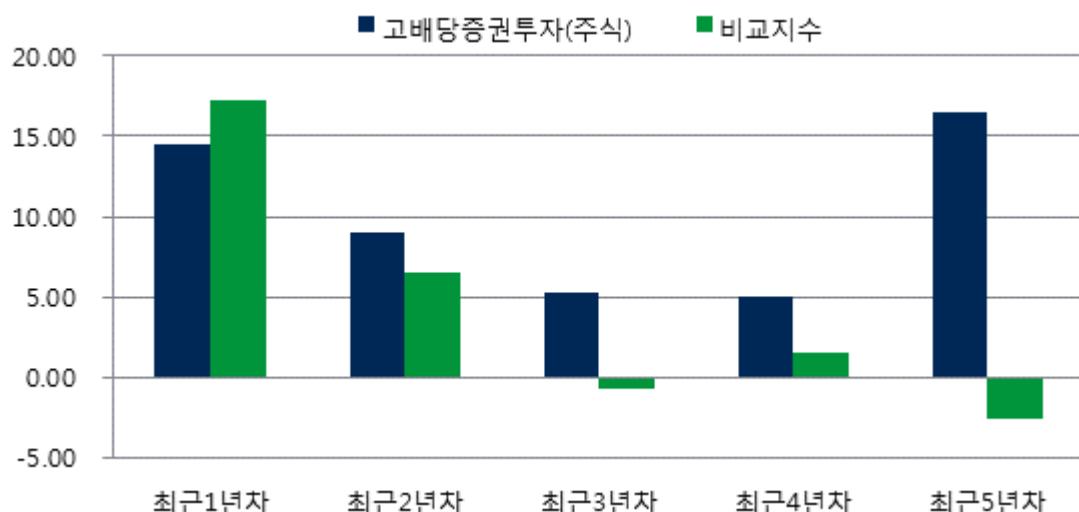
연도	최근1년차 2017.03.11 ~ 2018.03.10	최근2년차 2016.03.11 ~ 2017.03.10	최근3년차 2015.03.11 ~ 2016.03.10	최근4년차 2014.03.11 ~ 2015.03.10	최근5년차 2013.03.11 ~ 2014.03.10
	(단위 : %)				
투자회사	14.50	9.04	5.21	5.02	16.52
Class A	14.34	8.87	5.08	4.98	
Class Ae	15.02	9.51	5.71	4.96	
Class Ce	14.90	9.40	5.61	4.85	

Class I	15.44	9.91	6.10	-3.64	
Class W	15.48	9.94	6.14	4.99	
Class S	15.08	9.56	5.77	3.24	
Class S-P	15.25	9.72	-0.13		
Class C-P	14.62	9.13	1.91		
Class P-F	0.00	3.59			
비교지수	17.26	6.50	-0.78	1.55	-2.57

주1)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증권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주2)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 기간수익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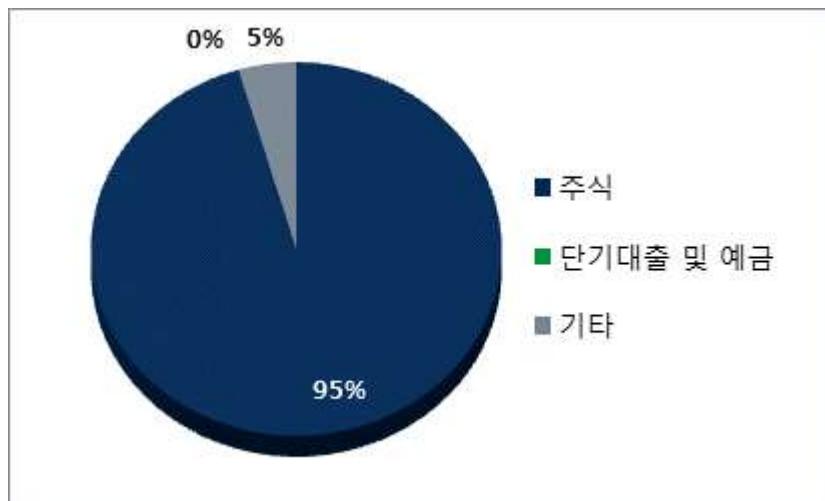
*비교지수: KOSPI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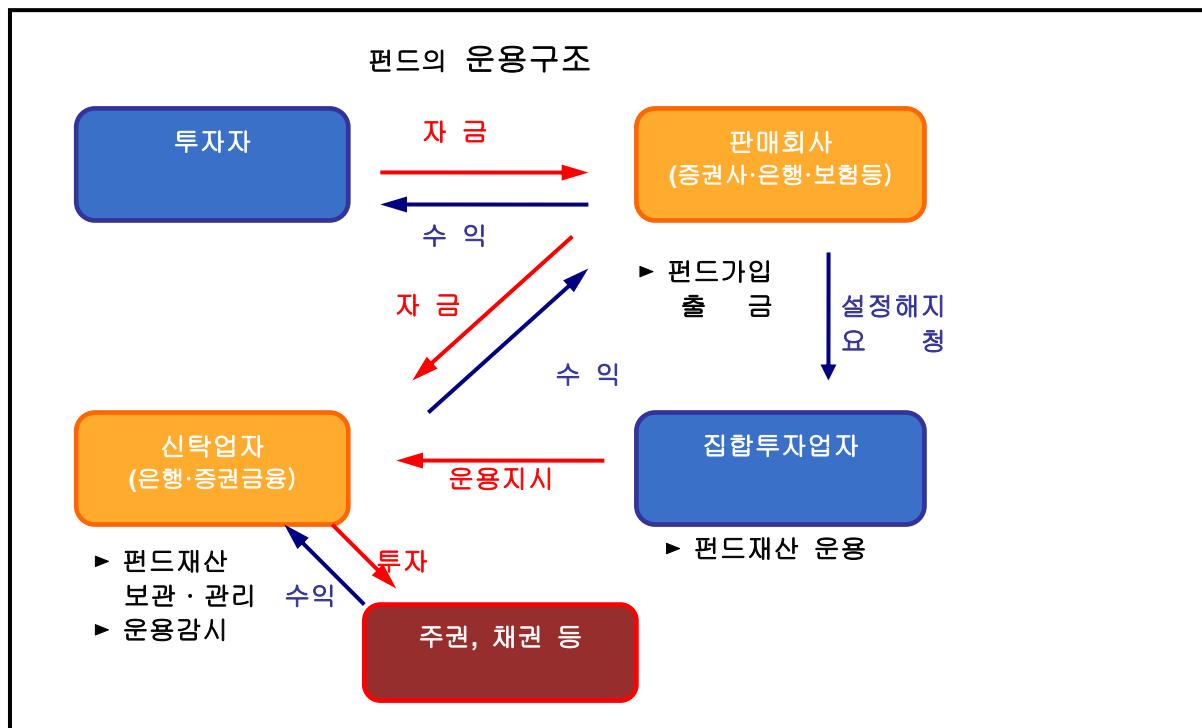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2018.03.10현재, 단위: 백만원, %)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단기 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 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증권	장내	장외			
KRW	359,743	0	0	0	0	0	3	17,197	376,943
	(95.44)	(0.0)	(0.0)	(0.0)	(0.0)	(0.0)	(0.00)	(4.56)	(100.00)
합계	359,743	0	0	0	0	0	3	17,197	376,943
	(95.44)	(0.0)	(0.0)	(0.0)	(0.0)	(0.0)	(0.00)	(4.56)	(100.00)

*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회사명	베어링자산운용 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04523) 서울시 중구 을지로29, 7층 (02)3788-0500 / www.barings.com/ko
회사연혁	1991.07 에셋코리아(주) 창립(자본금 5억) 1997.02 에셋코리아-동양투자자문 합병(자본금 30억) 1998.07 투자일임업무 자격획득 1999.02 자산운용사 허가 취득 및 등록(자본금 70 억) 1999.03 SEI Investments, IFC 와 합작 2002.04 자본금 증자(자본금 120 억) 2004.07 MetLife Inc. Holdings 지분 인수(34.0%) 2013.03 Barings Asset Management (Asia) Limited 지분인수 (100%)
자본금	120억 원
주요주주 현황	Barings Asset Management (Asia) Limited (100%)

나. 주요 업무

[주요업무]

투자회사의 설립, 해산 / 투자회사의 운용, 운용지시 /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선관의무]

투자회사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정관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투자매매업자·투자증개업자(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 백만원)

요약 대차대조표			요약 손익계산서		
항 목	FY 2017 2017.12.31 현재	FY 2016 2016.12.31 현재	항 목	FY 2017 2017.01.01~ 2017.12.31	FY 2016 2016.01.01~ 2016.12.31
유동자산	61,520	42,187	영업수익	26,489	18,371
비유동자산	3,827	2,840	영업비용	13,218	12,661
자산총계	65,347	45,028	영업이익(손실)	13,270	5,710
유동부채	6,256	4,402	영업외수익	4	10
비유동부채	13,247	5,115	영업외비용	19	2
부채총계	19,503	9,517	경상이익(손실)	13,255	5,718
자본금	12,000	12,000	특별이익	0	0
이익잉여금	33,844	23,511	특별손실	0	0
자본조정	0	0	법인세 비용 차감전순이익	13,255	5,718
자본총계	45,844	35,511	법인세 비용	2,922	1,308
부채 및 자본총계	65,347	45,028	당기 순이익(순손실)	10,333	4,410

라. 운용자산규모 (2018.03.10 현재, 단위: 억원)

집합투자 기구종류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MMF	총 계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재간접				
수탁고	13,567	1,751	9,266	255	0	336	0	25,175

주1) 투자일임 및 투자자문 운용자산 제외한 수치임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업무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음****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음****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한국씨티은행
주소 및 연락처	(04521)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24(다동) (02)3455-2114 / www.citibank.co.kr
회사연혁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

나. 주요 업무

(1) 주요업무

투자회사재산의 보관 및 관리
집합투자업자의 투자회사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회사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주식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회사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의무] 신탁업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신탁업자는 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③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3자로부터 위탁 받은 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이라는 사실과 위탁자를 명기하여야 합니다.
- ④ 신탁업자는 신탁재산 중 증권, 그 밖에 법 시행령 제268조제1항에 정하는 것을 자신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집합투자기구 별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합니다.
- ⑤ 집합투자업자가 신탁업자에게 자산의 취득·처분 등의 이행 또는 보관·관리 등에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 신탁업자는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각각의 집합투자재산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⑥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3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집합투자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⑦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⑧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자기의 고유재산의 운용,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또는 자기가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⑨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 투자설명서가 법령·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의 여부
 -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의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추가발행시 기존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는지의 여부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정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주주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HSBC 펀드서비스(주)
주소 및 연락처	(04511) 서울시 중구 칠판로 37 HSBC 빌딩 12층 (02)3771-3800 http://www.hsbc.co.kr/1/2/about-kr/about-us-company/hsbc-fund
연혁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

나. 주요업무

기준가격의 산정 및 기준가격의 통보업무를 수행합니다.

다.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주주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한국자산평가㈜	KIS 채권평가㈜	NICE 피앤파이㈜	에프앤자산평가㈜
주소 및 연락처	(03131) 서울 종로구 율곡로88 (운니동 98-5) 삼환빌딩 4층 (02)399-3350 www.koreaap.com	(07328)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한국화재보험협회4층 (02)3215-1400 www.bond.co.kr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19 (02)398-3900 www.npricing.co.kr	(03162) 서울 종로구 인사동5길 29 태화빌딩 4층 (02) 721-5300 www.fnpricing.com
연혁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			

나.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회사의 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제공합니다.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등

1) 주주총회의 구성

- ① 이 투자회사는 전체 투자자로 구성되는 주주총회를 듭니다.
- ② 주주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 모두 투자회사의 주주총회 개최 사유 중 이 투자회사의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습니다.
- ③ 종류형 투자회사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수익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투자자로 구성되는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주주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주주총회의 소집

- 주주총회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가 소집을 요청하여 법인이사가 소집하며 회사의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기타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주식총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주주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주주총회 소집을 이사회에 요청하는 경우에 이사회는 1 월이내에 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주식총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주주에 의한 요청이 있은 후 1 월 이내에 이사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주주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주식총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 주주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을 정하여 2 주간 전에 각 주주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 상의 주소에 계속 3 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 회사는 당해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주주총회는 발행된 주식총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주주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의결합니다. 다만 상법 제434조의 결의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합니다.
- 주주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주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주주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가 소유한 주식총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주주에게 법시행령 제221조제6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주식총수가 발행된 주식총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시행령 제221조제7항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합산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주주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주주총회일부터 6개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연기주주총회

- 집합투자업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주주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주주총회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주주총회(이하 "연기주주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주주총회일 1주 전까지 연기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연기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2항의 "의결권 행사방법"을 적용합니다. 연기주주총회의 경우 "발행된 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은 "발행된 주식주수의 8분의 1이상"으로 보고, "발행주식총수의 5분의 1이상"은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이상"으로 적용하여 결의할 수 있습니다.

3) 주주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주주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 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투자신탁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② 신탁업자의 변경 (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 ③ 투자회사의 계약기간의 변경 (단 투자회사를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 ④ 투자회사의 종류의 변경
- ⑤ 투자회사의 주된 투자자산의 변경
- ⑥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양도
- ⑦ 환매금지투자회사가 투자회사를 아닌 환매금지투자회사로 변경
- ⑧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⑨ 법 제 204조제2항에 따른 투자회사의 합병(단,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회사의 합병 등 법 시행령 제233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⑩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주주는 주주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에게 주식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① 법 제19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정관의 변경 또는 법 제204조제2항에 따른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반대(주주총회 전에 회사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주주가 그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② 법 204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이 회사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법시행령 제222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주식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③ 투자회사는 매수청구기간의 종료일에 환매 청구한 것으로 보아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주식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다.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회사를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주주총회의 투자회사 해지 결의, 투자회사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회사를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회사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 ①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회사나 투자의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수익자에 관련된 신탁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 ②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회사재산 명세서
 - 수익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투자회사재산 운용내역서
- ③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 ①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②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③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해당주체¹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투자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해당주체¹: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를 지칭),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가 신탁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합니다.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① 이 상품의 집합투자규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③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투자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합니다.

- ① 정관에서 정한 존속기간의 만료, 그 밖의 해산사유의 발생
- ② 주주총회의 해산 결의
- ③ 투자회사의 피흡수합병
- ④ 투자회사의 파산
- ⑤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 ⑥ 투자회사 등록의 취소
- ⑦ 주주(법인이사인 주주는 제외한다)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31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미수금 및 미지급금의 처리

투자회사를 해지하는 경우 미수금 채권 또는 미지급 채무가 발생한 때에는 공정가액으로 투자회사를 해지하는 날에 그 미수금 채권 또는 미지급 채무를 집합투자업자가 양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미수금 채권 또는 미지급 채무를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양도할 수 있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투자회사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회사의 자본변동 현황
 -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 법 제 87조제8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가 기재된 서류
 -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증개업자별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회사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이하 “결산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① 대차대조표
- ② 손익계산서
- ③ 자산운용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회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투자회사의 회계기간 종료
- ② 투자회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③ 투자회사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 ①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모투자회사의 내용을 포함)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 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주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주주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주주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②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투자회사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 ③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수익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정관의 주요 변경사항
-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3) 주주총회의 결의내용 등
- 4) 법 제247조 제5항의 확인사항
- 5)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정관변경에 관한 공시

투자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정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관의 내용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16 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 정관으로 회사의 존속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 존속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
- 투자회사종류의 변경

-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환매금지형 투자회사로의 변경
-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회사는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모투자회사의 경우를 포함)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 (www.barings.com/ko) ·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집합투자업자 · 판매회사의 본 · 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①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 ②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③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 ④ 집합주주총회의 결의내용
- ⑤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⑥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 분할 ·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 · 양수
- ⑦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 ⑧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합니다)로서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임의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⑨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임의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⑩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 행사 내용 및 그 사유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
 - 법 제 87 조제 2 항 및 3 항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 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법 제 87 조제 7 항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 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 87 조제 7 항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 ②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매년 4월30일까지 직전연도 4월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증개업자 선정 기준

구 분	증개회사의 선정기준
투자증권 및 장내파생상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 증권사 및 선물회사의 선정기준은 비용/ 증개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내 채권시장의 특성상 증개수수료(brokerage fee)는 증권사별 경쟁에 의한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거래에 따른 명목 비용은 동일함 2. 비용(Cost) 개념은 단지 증개수수료(brokerage fee)로 한정하지 않고, 거래 지연에 따른 시간비용(timing cost)과 체결실패에 따른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을 포함하여 넓게 해석할 경우 증개회사별로 거래비용(Cost)이 달라질 수 있음 ■ 증개능력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호가의 정확성과 신속한 체결 능력이 증권사 선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 2. 증개회사의 팀워크와 개별 브로커의 능력을 감안하여 거래 우선순위 결정 ■ 증개회사의 안정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증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고려 2. 매매와 관련된 리스크 발생 가능성의 없다고 판단되는 회사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 사항: 해당사항 없음

[붙임] 용어풀이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 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집합투자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회사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회사	집합투사업자와 신탁업자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투자회사	설립자본금을 바탕으로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수익증권	펀드(투자회사)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특별자산(증권 및 부동산을 제외한 투자대상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을 주식, 채권, 특별자산,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 전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폐쇄형	환매가 가능하지 않은 펀드를 말합니다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모자형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모펀드 외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종류형	멀티클래스 펀드로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자본이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배당소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보수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선취수수료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후취수수료	펀드 환매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펀드를 일정 기간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집합주주총회	집합투자규약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하는 기구.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릅니다.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를 말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레버리지효과	차입 등의 방법으로 투자원본보다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투자성과의 크기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상승하면 원본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이 더 크지만 하락하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선물환거래	미래의 거래 환율 가격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정해놓는 거래를 말합니다.
금리스왑	금융 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하여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성과보수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받는 보수를 말하여 사모 펀드에만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신주인수권부 사채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합니다.
전환사채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주식워런트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증서로 주식옵션과 유사합니다.